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(생 략)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~3.(생 략) <신 설>	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~3.(현행과 같음) <u>4. 환매조건부 매수</u>
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(생 략)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4.(생 략) <신 설> ③~⑤(생 략)	제46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(현행과 같음)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4.(현행과 같음) <u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 ③~⑤(현행과 같음)
<신 설>	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